

국내채권관리규정

제 정 : 1994.12. 9
1차 개정 : 1998.10. 1
2차 개정 : 1999. 9.27
3차 개정 : 2001. 8. 3
4차 개정 : 2002.12. 6
5차 개정 : 2006.10.12
6차 개정 : 2009. 4. 3
7차 개정 : 2010. 7. 6
8차 개정 : 2017. 11.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업무방법서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관계자에 대한 구상권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구상권 관리업무는 무역보험 법령과 관련 약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무역보험 사고로 인해 공사가 채무관계자에 대해 가지는 각종 국내채권의 관리업무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구상권"이라 함은 공사가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사전 구상권 포함)을 말한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제외한다.

2.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채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채무자와 그 연대보증인

나. 주채무의 연대보증인 다만, 연대보증약정서등에서 우리공사의 보증부분을 주채무 연대보증인의 피담보 채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거나 이에 준하는 문언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어음법상의 채무자 다만, 사고신고서를 제출하고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채무의 인수인

마. 상속(유증 포함)에 의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자. 다만, 주채무자(주채무의 인수인, 개인기업의 동업자 포함) 이외의 채무관계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재산상속이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그 상속재산의 구상실익 범위 내에서 채무관계자로 본다.

바. 물상보증인(담보제공자)

사.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자

아. 손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해 가액배상판결을 받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 사기, 기망, 업무상 과실 등으로 구상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차.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자

3. 이 규정에서 "법적 절차"라 함은 담보권의 실행, 독촉절차(지급명령 신청), 소송 및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등 집행보전절차 포함)을 말한다.

4. "대지급금"이라 함은 공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지급한 화재보험료, 근저당권 설정비용 및 권리의 보전 또는 실행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5. "국내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다만, 국외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제외한다.

가. 구상채권: 수출신용보증종목 사고로 발생한 채권

나. 대위채권: 수출보증보험 및 수입보험 등 보험계약자가 금융기관인 보험종목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이전(보험자 대위)받아 발생한 채권

다. 특수채권: 상각한 구상채권

라. 미환수채권: 환변동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이익금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채권

마. 기타 국내채권: 그 외 무역보험 사고로 발생한 채무관계자에 대한 각종 채권

제4조(구상권 행사의 범위) ① 이 규정에 의한 구상권 행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에서 정한 채권 및 그에 대한 종속채권

가. 주채무자 및 신용보증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백지어음 배서·보증에 의한 보증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위변제(또는 구상처분)한 금액 및 그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또는 공사가 정한 납부기한 중 늦은 날의 다음날부터 회수하는 날까지 공사에서 정한 율(손해금율)에 의하여 계산한 손해금

나. 주채무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민법상 공동보증인으로서의 부담부분 및 그에 대하여 민사법정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2. 어음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는 어음금액 및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만기 이후의 이자

3. 미수보증료

4. 대지급금

5. 확정판결로 인해 제1호 '나'목 및 제2호의 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동 변경이율을 적용한 이자

② 보증채무이행전의 채무관계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의 범위는 신용보증에 의한 주채무의 잔액 및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으로 한다.

③ 신용보증약정 체결시 백지어음의 발행 및 배서·보증을 받은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보충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가'목의 금액과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금액의 합계액을 어음금액으로 하며 보충권 행사후의 구상권 행사의 범위는 제1항 제2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제5조(구상권의 행사) ①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먼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납부기일을 정하여 자진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변제 촉구문을 대위변제 즉시 채무관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구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전이라도 사전 변제 촉구문을 발송할 수 있다.

② 채무관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금액과 납부기일 다음날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서 공사가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받는다.

③ 채무관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에 대하여 공히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의 변제의사와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 중 적합한 방법으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변제촉구

2. 가압류등 채권확보절차

3. 지급명령신청

4. 소송

5. 담보권의 실행 및 강제집행

6. 백지어음보충권의 행사 및 지급제시

제6조(특별관리)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주채무자와 관리약정을 체결하고 임·직원을 파견하여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위탁) ① 구상권의 관리 및 행사에 관한 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채무관계자 및 담보관련은행(채권자)에게 구상권 회수위임의 뜻을 통지한다.

제 2 장 구상권의 보전

제8조(재산조사) ① 구상권행사의 대상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재산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재산조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내채권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채권보전) ① 제8조에 의한 재산조사 결과 발견된 채무관계자의 소유재산이 구상권 회수에 기여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설정 기타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채권보전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내채권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담보물관리) ① 사고 발생이후 채무관계자의 담보물에 대하여는 그 현황 및 변동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담보권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양도담보물 관리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내채권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효관리) ① 구상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단계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제1단계 시효관리(기본 시효관리)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별표"의 소멸시효 기간내에 소멸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조사 및 구상권 회수활동 결과 발견재산이 없고 생활수준 등으로 보아 채무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시효를 완성시킬 수 있다.

가. 채권보전조치한 재산의 시가가 소송 및 강제집행비용과 선순위 채권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나. 채무관계자가 사망하고 구상실익 있는 상속재산(주채무자의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 포함)이 없을때

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계속 추적의 어려울 때

라. 65세 이상으로서 건강상태 등으로 보아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

마.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허무인 명의표시, 무재산 및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바. 기타 채무관계자의 학력, 경력 및 소득수준 등으로 보아 장래 채무상환능력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사. 기타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회수실익이 없는 것으로 통지된 경우 등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2. 제2단계 시효관리(연장 시효관리)

제1호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조치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시효가 연장된 구상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도래될 때에는 특별히 구상실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멸시효

를 완성시킨다.

- ②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전부에 대하여 구상실익이 없는 때에 한하여 시효를 완성시킬 수 있다. 다만, 구상채권은 상각 후 시효를 완성시켜야 한다.
- ③ 시효기일 도래전까지 시효중단절차 착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사전 품의 절차없이 시효완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시효중단조치) 제11조의 시효중단조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청구

가. 재판상의 청구

- (1) 지급명령
- (2) 청구소송
- (3) 지급명령, 소송의 기각, 각하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나. 재판외의 청구 : 채권의 시효완성기일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독촉장을 내용증명부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그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의 참가,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권의 시효완성기일 이전에 **집행권원**에 의한 집행문 또는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 등을 받아 대상물건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고 채무관계자에게 대한 통지는 집행으로 갈음한다.

3. 채무승인

채권의 시효완성기일 이전에 채무자로부터 어음채권에 있어서는 다음 양식의 채무승인 부전을 받아 어음에 붙여 간인하고, 어음이외의 채권에 있어서는 변제각서, 채무승인서(인감증명서 첨부)등을 받거나 일부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한다.

이 채무를 확실히 승인함.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제 3 장 구상권의 회수

제13조(채권등급 분류) ① 구상권 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채무관계자에 대한 회수실익 및 상환의사 등을 검토한 후 채권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

② 채권등급 분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내채권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임의회수) ① 채무관계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소 또는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 착수 전에 임의상환을 유도하여야 한다.

② 채무관계자로부터 임의회수를 유도할 경우 일시상환이 곤란한 경우의 분할상환 등은 “국내채권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강제회수) ① 보통의 수단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법적 절차에 의하여 회수대책을 강

구한다.

- ② 공사가 채무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양도담보물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담보권 실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③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보전조치를 한 재산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을 득한 후 회수실의 여부등을 판단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도록 하며, 배당금이 있을 경우 신속히 회수하여야 한다.
- ④ 강제회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내채권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회수대전의 총당순서) ① 구상권의 회수대전은 다음 순서에 따라 총당한다.

1. 대지급금
 2. 미수보증료
 3. 구상원금
 4. 제4조에서 정한 손해금
- ② 회생절차, 파산,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회수대전은 기본총당 순서에 불구하고 확정된 회생계획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총당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으로부터의 회수대전은 회생계획 등에 반영되지 않은 채권 및 반영된 채권의 최종회차부터 총당한다.
- ③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총당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구상채무의 대위변제등) ① 채무관계자 또는 담보물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변제신청서를 징구하고 이에 응한다.

- ②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대위변제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보증인의 승낙서를 징구하고 제1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 ③ 구상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을 때에는 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증서를 교부하고, 구상권 전액의 대위변제가 있을 때에는 대위변제증서 및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등을 변제자에게 교부하고 피보증인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
- ④ 구상채무의 대물변제는 구상권 회수에 유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대물변제가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기업이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한다.

제18조(회수보상금의 지급) 구상권의 회수와 재산발견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대하여는 채권관리담당 본부장이 따로 정하는 “국내채권 회수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구상권 행사의 유예 및 채무의 감면

제 1 절 구상권 행사의 유예

제19조(유예의 정의) 구상권 행사의 유예라 함은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함을 말한다. 다만,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거나 당초보다 유리하게 채권보전이 되는 조건하에서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권리행사를 보류 또는 취하하는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이를 구상권 행사의 유예로 보지 아니한다.

1. 담보권의 실행 및 강제집행의 보류 또는 취하
2. 소(지급명령 포함)제기의 보류 또는 취하
3. 기타 권리행사의 보류 또는 취하

제20조(구상유예) 채무관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구상권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채무관계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채무관계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사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21조(구상권 보전조치) “구상권 행사의 유예”를 한 경우에도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및 시효중단조치 등 구상권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22조(유예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없이 유예를 취소하고 구상권 행사를 하여야 한다.

1. 신용상태가 유예시점보다 현저하게 악화되었을 때
2. 유예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기타 구상권 보전에 우려가 있을 때

제 2 절 채무의 감면

제23조(구상채무의 감면)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원금은 감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채무관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채권관리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때
2. 채무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구상권 회수에 실익이 있을 것으로 인정하는 때
3.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 5 장 구상채권의 상각 및 특수채권등

제 1 절 구상채권의 상각

제24조(구상채권의 상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상각처리할 수 있다.

1.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채권이 무효로 된 경우

제25조(상각 방법) 상각승인을 얻은 구상채권은 회계연도말 현재로 상각 처리한다. 다만, 따로 상각일을 지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절 특수채권

제26조(특수채권의 내용)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이를 특수채권으로 처리한다. 다만, 채무를 면제하였거나 채권이 무효로 된 것은 특수채권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1. 상각한 구상원금과 대지급금
2. 제1호의 채권에 부수하는 미수보증료와 손해금

제27조(특수채권의 관리범위) 특수채권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채권으로 편입한 후에 회수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법적 절차의 진행
2. 채무관계자 또는 제3자의 권리행사에 부응한 조치

제28조(특수채권회수시의 처리) 특수채권의 회수대전은 다음 순서에 따라 총당한다.

1. 대지급금 및 상각후 지출한 대지급성 비용
2. 미수보증료
3. 상각한 구상원금
4. 손해금

제29조(특수채권관리비용 등의 처리) ① 특수채권 관리에 소요되는 공탁금은 공탁금계정으로 처리하고, 기타비용은 비용계정으로 처리한다.

② 특수채권 관리에 소요된 비용 중 대지급성 비용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수익계정으로 처리한다.

제30조(특수채권의 시효완성) ① 구상실익이 없는 특수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완성시킨다.

② 특수채권에 대한 시효완성은 주채무자 단위로 일괄 정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증서 단위로 분할하여 소멸시효를 완성시킬 수 있다.

제31조(구상권 관리 및 행사의 종결)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국내채권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 관리 및 행사를 종결할 수 있다.

제32조(특수채권의 매각) 특수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특수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3조(매각절차) 매각가격은 회계법인이 평가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권양도·양수인이 합의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각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 6 장 소송의 처리등

제34조(소송수행) ①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채무관계자가 구상채무를 부인하거나 **공사와** 구상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함으로써 구상권을 조기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35조(소송결과의 처리) 소송결과 공사패소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7 장 회생·파산 및 워크아웃

제36조(회생·파산 등)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관계자에 대한 구상권 관리업무는 동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채무의 감면 등이 포함된 회생(변제)계획안에 대해서는 구상의 실익을 판단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회생·파산·개인회생 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워크아웃)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간 협약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관리업무는 동 법령 또는 동 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채무의 감면 등이 포함된 기업개선계획에 대해서는 구상의 실익을 판단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워크아웃기업 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장 보 칙

제38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국내채권관리요령”, “채권관리 소송변호사 위임요령”, “채권추심위임요령”, “구상채권 상각기준” 등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서식 등의 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관계서식의 제정 및 개폐는 본사의 사후관리업무 담당부서(또는 팀)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제정)

이 규정은 1994. 12. 9.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이 규정은 199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

이 규정은 200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이 규정은 2002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5)

- 1.(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에 의한 절차를 진행하는 주채무자 등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6)

- 1.(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 2.(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다른 내규상의 “구상권관리규정”의 규정명칭은 “국내채권관리 규정”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7)

- 1.(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

- 1.(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구분	권 리 구 분	기 산 일	기간	근 거
1	수출신용보증약정서, 기타 증서에 의한 각종 채권 가. 사전구상권 나. 보증채무이행청구권 다. 주채무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라. 보증료, 연체료 마. 위 "가"호 내지 "라"호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u>대지급한</u> 비용	사고발생일 보증채무이행일 " 지급사유발생일 <u>대지급일</u>	5년 " " " "	상법 제64조 " " " "
2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절차, 재판상의 화해, 포기, 인락조서에의 기재, 각종의 조정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확정일	10년	민법 제165조
3	소지인의 환어음인수인 및 약속어음발행인 및 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만기일	3년	어음법 제70조 제1항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4	소지인의 환어음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거절증서작성일 또는 동면제시는 만기일	1년	어음법 제70조 <u>제2항</u>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5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	6월	어음법 제70조 제3항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어음법 제80조
6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	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소멸한 때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5년	어음법 제79조
7	확정된 지급명령(구상채권)	확정일	10년	민사소송법 제474조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변제)계획인가시 주채무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주채무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회생(변제)계획인가일	5년	대판 94다 13893

- 주 : 1. 어음법상 시효기간의 기산에 있어서는 민법 제157조 단서의 규정과는 달리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어음법 제73조)
2. 어음법상 어음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그 중단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발생한다.(어음법 제71조)